

NEWS LETTER

2026-03-31

Legal Issue

-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가
-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MINWHO News

- 양진영 변호사, 매일경제TV '경제토크쇼' 출연
'AI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쟁점' 관련
- 김경환 변호사, 뉴스핌 인터뷰
'AI 기본법 시행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쟁점' 관련
-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X ZUZU 웨비나
'실무에 바로 쓰는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참여

Business CASE

Mi 법무법인 민후



Legal Issue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가

김경환 대표변호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구로 활용해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SW) 코드를 산출했을 때,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시 파기하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한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 있는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2009도3915 등)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특히 자료 유출 사안에서는 해당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우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이 문제다.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 AI가 초안을 잡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와 회사의 인프라를 투입해 얻은 결과물이라면, 직원은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유지할 주체가 된다.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이용해 가치를 창출한 주체는 회사와 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목은 당해 AI 산출물이 대법원이 실시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첫째로 비공시성 요건이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한다. 단순히 생성형 AI가 일반적인 질의에 내놓은 범용적 답변이나 인터넷상에 산재한 공개 소스코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의 내부 전략, 미공개 사업 계획, 또는 회사의 독자적인 데이터셋을 프롬프트에 결합해 얻어낸 특정 결과물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정보가 된다.

둘째로 상당한 노력 요건이다. 판례는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을 것을 요한다. 원하는 수준의 정교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직원이 수행한 다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생성물의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고 회사의 기존 시스템에 이식하기 위해 수행한 디버깅 및 최적화 과정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에 해당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롬프트는 상당한 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로 경쟁상 이익(경제적 유용성) 요건이다. 판례는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AI로 최적화된 코드가 서비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또는 AI가 분석한 기획서가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보장하는 독창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다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

나아가 대법원은 퇴사 시 이러한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임무위배로 규정한다. AI로 만든 결과물이 회사의 업무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었음에도 이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해 유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순간 배임되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AI를 활용해 도출한 기획서와 코드가 비공지성, 상당한 노력, 경제적 유용성을 갖춰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대법원이 제시하는 업무상배임죄의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AI의 업무상 이용이 보편화되고 AI의 능력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은 엄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김도윤 변호사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는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SNS,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리뷰는 때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악의적 의도를 내포하여 기업의 명성과 영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기업은 단순히 온라인 여론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사실 여부·법적 침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부정적 콘텐츠의 성격 구분: 사실 적시 vs. 의견·평가

온라인상 부정적 콘텐츠는 크게 '사실 적시형'과 '의견·평가형'으로 구분된다.

사실 적시형 콘텐츠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내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이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보다 중한 처벌에 처하여진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로 인해 회사에 매출 감소 등 업무상 방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의견·평가형 콘텐츠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그 진위가 입증 불가능한 표현을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2.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1단계 : 신속한 확산 차단, 임시조치 요청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빠르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 조치 요청이다. 기업은 해당 게시물에 명예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유튜브·네이버·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 동안 임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2단계 : 형사 고소, 민사상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콘텐츠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고, 이와 함께 민사상 조치로서 본안 소송 전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유포 금지 확보를 위해 게시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법적 대응 시 유의사항: '정당한 비판'과의 경계

기업이 법적 대응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기업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즉, 콘텐츠 게시자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게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실제로 기업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잘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도윤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6
kimdy@minwho.kr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매일경제TV '경제토크쇼픽' 출연 'AI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쟁점'

양진영 변호사, 'AI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쟁점' 관련 매일경제TV <경제토크쇼픽> 출연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AI 학습 데이터의 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 변호사는 매일경제TV <경제 토크쇼 픽>에 출연해 AI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 자산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와 IP 분쟁 구조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웹 크롤링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전송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권리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는 만큼, 무단 활용이나 외부 유출은 기업의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활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INWHO NEWS

김경환 대표변호사, 뉴스핌 인터뷰 'AI 기본법 시행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쟁점'

김경환 변호사, AI 기본법 시행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쟁점 관련 인터뷰(뉴스핌)

이번 기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AI 산업의 성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을 전면 시행한 첫 사례로, 고영향 AI 규율과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며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조정하는 구조를 갖추었으며,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및 공공 영역에서의 AI 도입 확대 등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도 병행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 활용 확대는 필수적인 흐름이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필요하다"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경직된 규제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고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한 점은 이러한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사회적 합의와 사례 축적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MINWHO NEWS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X ZUZU 웨비나 '실무에 바로 쓰는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참여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X ZUZU '실무에 바로 쓰는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참여

한지윤 변호사는 ZUZU와 함께 진행된 '2026 정기주주총회 실전 노하우' 웨비나에 참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 실무자들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주주총회의 핵심 개념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 투자자 및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며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지윤 변호사는 2부 Q&A 세션에서 웨비나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을 제공하고,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소집통지 절차, 기준일 설정, 안건 구성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법률 정보와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선행디자인 유사성 주장에 따른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조력,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2. 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고 빠른 해결 도출
3. 분양 대행 사업자의 민감정보 무단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4. 온라인 플랫폼 내 브랜드 무단 사용 및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5.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6.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8.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9. AI 데이터 구축·클라우드소싱 플랫폼 운영사에 스타트업 인수계약 (SPA), 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및 법률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10.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게시물 대응 및 기업 명예훼손 중단 요청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자문 제공

Mi 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 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